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의 안 번 호 6989

제출연월일 : 2024. 12. 2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「국가초고성 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수행하도록 하고, 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.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2조(「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국 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"를 "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(이하 "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"로 한다.

제5조제2항 전단 중 "제7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"를 "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"로 한다.

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위원회"를 "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"로 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 중 "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

기본계획"을 "기본계획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"을 "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"로 한다.

제3조(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)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주요 정책의 심의·의결)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한다)가 심의·의결한다.

- 1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
- 2.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
- 4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- 5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 단체 및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
- 6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 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

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9조의2 중 "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, 제48조제2항"을 "제48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4조(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)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제5조(「한국연구재단법」의 개정)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「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터 위원회가 정한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

통신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본다.

-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「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의 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3조(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에 심의 또는 보고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심의 또는 보고 요청된 것으로본다.
 -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표준 성과지표의 제공) ①	제12조(표준 성과지표의 제공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	<u><삭 제></u>
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	
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	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	
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	
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	
③ 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	<u><삭 제></u>
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	
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
<u>정한다.</u>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"초고성능컴퓨터"란 대용량	1
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	
처리·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	
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	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
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	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
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	문회의(이하 "국가과학기술자
말한다.	문회의"라 한다)의 심의를 거
	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
	<u>.</u>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5조(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	제5조(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
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	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	②
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	
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	
하고, 제7조에 따른 국가초고성	<u>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</u>
<u>능컴퓨팅위원회</u> 의 심의를 거쳐	
이를 확정한다. 기본계획을 변	
경하는 경우에도 같다.	

- ③ ~ ⑤ (생 략)
- 제7조(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 회) 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 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기본계획의 수립・변경과 이

 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

 그 집행의 조정
 - 2.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
 - 3.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3의2.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에관한 사항
 - 4.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및 배분에 관한 사항
 - 5.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공동활용에 관한 사항
 - 6.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인 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 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,

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 <삭 제>

- <u>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</u> <u>의 조정</u>
- 7. 첨단연구망의 유지·보수· 활용에 관한 사항
- 8.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 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 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
- 9.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-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

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

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

 직공무원
- 2.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

런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
- 3.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위촉하는 사람
-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 으로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실무위원회를 둔다.
- ⑥ 위원회 및 국가초고성능컴퓨 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
제7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)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본다.

제8조(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시책 강구) ① (생 략)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시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<u>위원회</u>에 보고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저	[8조(국가초	고성	능컴	퓨팅	육	성
	시책	강구)	1	(현형	생과 :	같음)	
	2 -						
						<u>국가</u>	과
	<u>학기</u> ·	술자문	회의	<u> </u>			

제9조(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)	제9조(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)
① · 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	③
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	
1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	1. 기본계획
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	
수립 • 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	
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	
정에 대한 지원	
2.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	2.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
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	
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	
이에 따른 중요 정책, 인력활	
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	
정에 대한 지원	

3. ~ 14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3. ~ 14. (생 략)

④・⑤ (생 략)

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혀 행

제5조(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 회)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

 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

 사항
- 2.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 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

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
- 4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

 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

 원에 관한 사항
- 5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 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 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 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

개 정 안

제5조(주요 정책의 심의·의결)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가 심의 • 의결한다.

- 1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사항
- 2.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
- 4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 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 원에 관한 사항
- 5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 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 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

- 6.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 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,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 원
- 2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발 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 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 람
-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 <삭 제> 회의 사무기구) 위원회의 업무

- 6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 전방안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 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 구를 둘 수 있다.

제7조(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 <삭 제> 회)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 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협의회의 업무・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9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지 의제)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이 아닌 사람, 제48조제2항에 따 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 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49조의]2(벌칙	적용에서	금 공무원
의제)	제48조	제2항	
	·		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연구개발특구위원회) ① 특	제7조(연구개발특구위원회) ①
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	
사항을 심의・의결하기 위하여	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	
발특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	
한다)를 둔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
	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
	<u>사항</u>
8. (생략)	<u>9</u> . (현행 제8호와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	제15조(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
구사업 관리) ①·② (생 략)	구사업 관리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	<u><</u> 삭 제>
한 업무수행 평가를 위하여 평	
가자 선정과정, 평가과정, 연구	
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	
외부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	
④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	<u><삭 제></u>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	
통신부장관이 임명・위촉하거	
<u>나 해임·해촉하되, 외부평가위</u>	
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	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